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고,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10개의 기획재정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제1조(「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5호, 제23호, 제24호 및 제30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1)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4항제4호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제4호 및 제5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소관”을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소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조 제2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3조제7항제3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8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의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 및 통계청장”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세·관세·조달 및 통계”를 “국세·관세 및 조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마목 중 “조세·관세·조달 및 통

계”를 “조세·관세 및 조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기호(*) 및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 기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의18서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기호(*) 및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 기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40조제2호·제9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7조(「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인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8제1호·제2호,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본문, 제45조의10제12항제1호바목, 제47조의2제2항제4호A), 같은 조 제5항제3호·제5호, 제50조의6제1호·제2호 및 제59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라목의 적용범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뒤쪽 첨부서류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뒤쪽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4호의21서식 앞쪽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의 개정)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4. 환경부”를 “14.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30. 특허청”을 “30. 지식재산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2.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생략)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출조합전시관(<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면세추천을 한 것에 한정한다)	5. ----- <u>산업통상부장관</u> ----- ----

6. ~ 22. (생 략)	6. ~ 22. (현행과 같음)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23.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
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24. ----- ----- <u>산업통상부장관</u> ----- -----
25. ~ 29. (생 략)	25. ~ 29. (현행과 같음)
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지정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을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0.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 ----- ----- ----- -----
31. ~ 34. (생 략)	31. ~ 3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 제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④ ----- -----.
1. 1의2. 삭 제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u>통계청장</u> 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 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나. ----- ----- ----- ----- <u>국가데이터처장</u> ----- ----- ----- ----- ----- -----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예산실) ① ~ ⑬ (생략) ⑭ 고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고용노동부 및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 7. (생략) ⑮ (생략) <16> 문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기금과 관련된 문화·관광·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예산·기금과 관련된 문화·관광·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제10조(예산실)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 ---. 1. ~ 3. (현행과 같음) 4. ----- 국가데이터처 ----- ----- 5. ~ 7. (현행과 같음) ⑮ (현행과 같음) ----- -----. 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영 제245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 1. (현행과 같음) 2. ----- ----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 ----- ----- ----- ② ----- ----- ----- ----- ----- 산업통상부장관----- ----- ----- ----- ----- -----.
--	---

3.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u> ----- ----- ---
4.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4. -----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u> ----- ----- -----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문화·관광·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5. ----- -----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u> ----- ----- -----
<17> 기후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u>기후에너지환경부</u> ----- ----- -----
5.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u>기후에너지환경부</u> -----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⑮·⑯ (생략)	⑮·⑯ (현행과 같음)
<20>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u>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소관</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u>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u> -----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㉑ ~ ㉓ (생략)	㉑ ~ ㉓ (현행과 같음)
<24>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3. ----- ---- <u>성평등가족부</u> ----- ----- -----
4.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4. ----- ---- <u>성평등가족부</u> ----- ----- -----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5. ----- ---- <u>성평등가족부</u>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㉔ ~ ㉖ (생략)	----- ㉔ ~ ㉖ (현행과 같음)
제13조(정책조정국) ① ~ ⑥ (생략)	제13조(정책조정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신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환경산업(환경부 소관)을 제외한다) 및 산업환경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3. -----기후에너지환경부-----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①·② (생략)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6. (생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삭제	
18. 환경부 소관 환경산업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18. <u>기후에너지환경부</u> ----- -----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u>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 및 통계청장</u> (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국세청장·관세청장 및 조달청장</u> ----- ----- ----- -----.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u>국세·관세·조달 및 통계</u>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u>국세·관세·조달 및 통계</u> 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생략) ② (생략)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 ----- -----. 1. ----- <u>국세·관세 및 조달</u> ----- ----- ----- 2. <u>국세·관세 및 조달</u> ----- -----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공통사항	1.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조세·관세·조달 및 통계</u>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	마. <u>조세·관세 및 조달</u> -----
바. (생략)	바.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u>통계청 소관</u>	<u><삭제></u>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④ (생략)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⑤-----
1. 삭제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광업법」에 의하여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4. ----- <u>산업통상부장관</u> -----
5. ~ 31. (생략)	5. ~ 31.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5. -----. --- <u>산업통상부장관</u> -----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2. -----

42조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u>산업통상부장관</u> ----- -----
3. ~ 8. (생략)	3. ~ 8. (현행과 같음)
9.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9.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영 제51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 ----- ----- -----.
1. 「 <u>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방송통신위원회</u>	1. 「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u>산업통상자원부</u>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된다.	② ----- <u>산업통상부</u>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 -----.
1.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u>산업통상자원부</u>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1. ----- <u>산</u> <u>업통상부</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⑤ ----- <u>산업통상부</u> <u>장관</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 ----- -----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 <u>산업통상부장관</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생략)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납부특례) 법 제8조의4에 따라 특허청장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양도하는 서류의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 또는 체신관서에 제시하고 징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납부특례) ----- -- <u>지식재산처장</u>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8(소재·부품·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및 경	제8조의8(소재·부품·장비의 범위) ----- ----- ----- -----. 1. ----- ----- ----- 산 <u>업통상부장관</u> ----- ----- 2. ----- ----- -----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제안보품목을 지정한 관계 중 양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품목	-----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 세면제등) ① ~ ⑤ (생략)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 세면제등)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요건 에 해당하여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첨단산업 인재혁 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 른 우수 해외인재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 출해야 한다.	⑥ ----- ----- -----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 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 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 획재정부장관과 <u>산업통상자원 부장관</u> 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 장연구개발시설 또는 국가전략 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신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 정 신청) ① ----- ----- ----- <u>산 업통상부장관</u> ----- ----- ----- ----- -----.

청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과 세연도에 완료된 둘 이상의 투 자에 대하여 각각 영 제21조제1 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늦게 완 료된 투자의 투자완료일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10(투자·상생협력 촉진 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⑪ (생략)	제45조의10(투자·상생협력 촉진 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영 제100조의3제1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 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 우”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제1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제2호 각 목에 따 른 보증기관과 체결하여 같은 목의 해당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⑫ ----- ----- ----- ----- -----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영 별표 7에 따른 신성장 ·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중 소기업(영 제9조제12항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및 <u>산업통 상자원부장관</u> 이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인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바. ----- ----- ----- ----- ----- <u>산업통 상부장관</u> ----- -----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⑬ ~ ⑰ (생 략)	⑬ ~ ⑰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 (생 략)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 · 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 제2호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 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	4. -----

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u>산 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 시된 매출액을 국외에서 경영 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한 금액	----- <u>산업통 상부장관</u> -----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04조의21제13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⑤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u>산업통상자 원부장관</u> 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 소 확인서 사본	3.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영 제104조의21제1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장 이 제4항에 따른 공장인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5. ----- ----- -----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제2항제2호에 따른 <u>산업통 상자원부장관</u> 의 고시에 따라 발급받은 유희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 <u>산업통상부장관</u> ----- ----- -----
~ (생 략)	~ (현행과 같음)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 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 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 ----- ----- ----- -----.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 항에 따라 <u>산업통상자원부장 관</u> 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 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1. ----- ----- <u>산업통상부장관</u> ----- ----- -----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 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 임을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2. ----- ----- <u>산업 통상부장관</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 -----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u>산업통상부 장관</u> -----.
--	----------------------------------